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76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임미애·이용선·오세희

이연희 • 전진숙 • 최민희

신정훈 · 강준현 · 서영석

황명선 • 박희승 • 권향엽

이재강 • 조인철 • 이병진

박지혜 • 윤건영 • 조계원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
·방임 또는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
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여성
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쉼터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이러한 관리지침 때문에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쉼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되고, 결국 계속되는 방황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쉼터의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32조의2).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계속 이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가정폭력등 사유"로 한다.

-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의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보호자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해당 가정밖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 터에 입소한 경우 그 입소 사실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친족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가정폭력등 사유"라 한다)가 원인

이 되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의 위치, 구체적인 명 칭, 전화번호 등 청소년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정 밖 청소 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보호자 또는 친족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소년쉼터 <u>계속 이용</u>) <u><신</u>	소년쉼터 <u>이용</u>) <u>① 청소년쉼터</u>
<u>설></u>	<u>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정</u>
	<u>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u>
	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가
	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의 복
	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
	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보
	호자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을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
	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
	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그 입
	소 사실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친족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
	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
	<u>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u>
	"가정폭력등 사유"라 한다)가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 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 치 ·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 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 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 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 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 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원인이 되어 청소년쉼터에 입 소한 경우 청소년쉼터의 위치, 구체적인 명칭, 전화번호 등 청 소년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 보를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보호자 또는 친 족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 다. (3) -----<u>가정폭력등 사유</u>-----1. • 2. (현행과 같음)